

강원지역혁신플랫폼(강원RIS) 3차년도 정밀의료분야 핵심기술개발과제

2024. 01. 31.(수)

[신청자격 및 신청제한]

Q-1	기술개발과제 참여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			
A-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원RIS사업 내 기술개발과제에 한하여(정밀의료, 스마트수소, 디지털헬스 포함) 주관연구책임자로는 1개 과제만 참여 가능합니다. (협업 참여는 가능) - 지정과제 협업 참여자는 1개의 자율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 가능하며, 지정과제 주관연구책임자는 자율과제에 협업 참여가 가능합니다. 			
	구분	지정과제	자율과제	가능 여부
	1	주관	주관	X
	2	주관	협업	○
	3	협업	주관	○
4	협업	협업	○	
※ 강원 RIS내 연구과제 개인 기여율(참여율) 총합 10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				

Q-2	[붙임2] 참여학과 및 참여기관 목록 상에 없는 대학이 참여하여도 되나요?
A-2	- 강원도 소재 대학이더라도 [붙임2] 목록 상에 기재되지 않은 대학은 참여가 어렵습니다. 참여대학의 학과는 참여학과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합니다.

Q-3	협업기관 중 강원지역 병원의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?
A-3	- 강원도 소재의 병원이면 참여 가능합니다.

Q-4	명예교수의 경우, 과제 참여 가능한가요?
A-4	- 명예교수의 경우, 참여대학의 소속으로 하여 연구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.

Q-5	동일 학과 교수 2명이 정밀의료사업단과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 과제를 동시에 참여할 경우, 참여제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
A-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관연구책임자는 기관당 1명으로 제한되므로, 두 분 중 한 분이 주관연구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. 이 경우, 다른 사업단의 과제에는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가 불가능하지만, 협업인력으로 참여는 가능합니다. - 동일 학과(대학)에서 교수님이 함께 참여하시는 경우 동일 기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한 분은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되시며, 다른 분은 주관기관의 참여인력으로 산정됩니다. 이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 인력은 다른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.

Q-6	(가)대학 OO학과 A연구자가 주관기관, (가)대학병원 B연구자가 협업기관으로 하여 지원하고 싶은데, 가능한가요? 동일한 (가)대학이라 불가능한가요?
A-6	- 가능합니다. 다만 기관이 동일하면, 같은 기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B연구자는 병원 소속으로 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. 강원대학교로 예를 들자면, 강원대학교 교수님을 주관으로 하고 강원대학교병원 교수님을 협업으로 하여 지원 가능합니다.
Q-7	협업기관을 대학으로 하는 경우, 협업기관 대학은 강원도 내 대학이거만 하면 되나요?
A-7	- 협업 대학도 RIS 참여대학이어야 합니다. RIS 참여대학은 “[붙임2] 참여학과 및 참여기관 목록” 참고 부탁드립니다.

[성과지표]

Q-1	성과지표 인정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? 공고문에는 연구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, 그 이후에 논문이 등재되면 성과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?
A-1	- 성과지표는 원칙적으로 협약 기간인 2024년 12월 31일 안에 성과가 완료되어야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Q-2	SCIE급 논문의 성과 인정 기준이 있나요?
A-2	- 과제 종료일까지의 게재 완료 건에 한하여 성과로 인정됩니다. (논문 특허 등 동일 적용) 하지만 accepted 완료 건에 한하여, 게재 확인서 발급이 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. (관련 증빙 자료 제출 필요)
Q-3	성과지표 중 논문의 경우 중복 사사가 가능한가요?
A-3	- 가능합니다.
Q-4	연구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, 이후 진행된 SCIE급 논문의 투고비용이나 게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-4	- 가능합니다.
Q-5	의무사항 중 학생 참여 필수 부분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모두 참여해야 하나요?
A-5	- 참여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중 선택적 참여가 가능합니다.
Q-6	박사후연구원(postdoc)도 과제 참여가 가능한가요?
A-6	- 불가능합니다.

Q-7	참여대학 학생 참여 시, 참여율을 계상하고, 학생 인건비 지출을 하지 않은 방법이 가능한가요?
A-7	- 참여대학 학생 참여는 과제 의무사항으로, 학생 참여율 계상 및 인건비 지출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.
Q-8	주관기관의 참여 연구생의 소속이 주관기관과 동일하지 않아도 되나요?
A-8	- 동일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주관기관이 강원대학교일 경우 참여학생 연구원 소속 역시 동일하게 강원대학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.
Q-9	학·석사 연계과정 중인 학생의 학위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?
A-9	- 각 대학의 학위 구분 규정에 따릅니다. 예를 들어 강원대학교의 경우, 강원대학교 「학·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」에 따라 수업연한 5년시, 학사학위과정은 “3.5년(7개 학기)” 석사학위과정은 “1.5년(3개 학기)”로 학위를 구분합니다.
Q-10	졸업생(학사/석사/박사)의 경우, 과제 참여제한 기준이 있나요?
A-10	- 졸업 후 2년 이내(수료 후 2년 이내)인 졸업생(수료생)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.
Q-11	참여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A-11	- 학위 및 참여율을 고려하시어 아래 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(월 기준급여 X 참여 개월 수 X 참여율) = 총액]
Q-12	[지정과제] 성과지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?
A-12	- 지정과제의 경우 [붙임1] RFP 연구주제안내서의 성과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Q-13	[자율과제] (성과지표_선택사항) 중복 선택도 인정되나요?
A-13	-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. 항목 별 각 1건 총 2건 이상 필수 선택하셔야 합니다.
Q-14	기술이전 시, 반드시 과제에 참여한 협업 기관으로 기술이전을 진행해야 하나요?
A-14	- 과제 협업 기관 외의 기업에도 기술이전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강원도 내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합니다.
Q-15	특허 신청 및 출원 관련하여 사업단과 연계된 기관이 있나요?
A-15	- 특허는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출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대학 소속이 아닌 경우 사업단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.

[예산편성]

Q-1	주관/협업의 연구비는 따로 지급되나요?
A-1	- 연구비는 주관기관에 지급되며, 주관연구책임자의 예산 담당자가 협업 비율에 따라 예산을 통제하셔야 합니다. (사업단에 공유 필수) - 집행현황은 매월 사업단에서 모니터링 되며, 사업단 내부의 집행 데이터와 주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집행 데이터가 일치해야 합니다.
Q-2	과제 간접비가 있나요?
A-2	- 강원 RIS 사업은 대학회계에 편입되어 간접비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.
Q-3	연구개발계획서 '연구개발비 현황'에 대응(현물)은 필수사항인가요?
A-3	- 필수사항은 아니며, 현물 사용 계획이 있으신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.
Q-4	대응자금 매칭의 경우, 연구개발비는 국고 예산에 대응자금이 추가된 금액이 총액이 되는 건가요?
A-4	- 맞습니다. 예를 들어 천만원의 대응자금이 매칭될 경우 국고 4천만원과 대응자금 천만원의 합인 5천만원이 연구개발비 총액이 됩니다.
Q-5	기여율과 협업기관의 예산이 연동되나요?
A-5	- 맞습니다. [과제총액 × 기여율 = (주관/협업)기관의 예산]입니다.
Q-6	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한 예산은 추후 변경이 불가능한가요?
A-6	- 가능합니다. 과제 선정 후에 제출하시는 수정사업계획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.
Q-7	연구개발계획서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, 용역비 한도가 있나요?
A-7	- 용역비는 일반연구비와 일반용역비를 포함하여 전체 과제비의 20% 이내로 책정 가능합니다.
Q-8	학생 인건비 외에 직원 인건비 편성이 가능한가요?
A-8	- 본사업은 인재양성사업으로 학생 인건비만 계상이 가능합니다.
Q-9	전체 과제비 중, 학생 인건비에 대한 비율 제한이 있을까요?
A-9	- 전체 과제비에서 인건비 제한은 없습니다.

[연구주제안내서 : RFP]

Q-1	TRL 4단계~8단계 이상은 모든 RFP에 적용되는 내용인가요?
A-1	- 그렇습니다. 제안하는 과제 모두(자율과제 포함) TRL 단계가 적용되며, 상용화 기술개발 단계 이상이어야 합니다. (TRL4~8)

[선정평가]

Q-1	평가 관련 일정과 발표 자료(PPT 등)를 알고 싶어요.
A-1	- 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, 주관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진행해야 합니다.

[신청서류]

Q-1	'신청 적정성 확인서'는 기업만 작성하면 되나요?
A-1	- 과제 참여기관에 기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, 해당 기업별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 - 기업 작성 시 신용등급평가서 등 관련 증빙을 함께 첨부해주셔야 합니다.

Q-2	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하여 정해진 분량이 있을까요?
A-2	- 목차의 1~6번까지 30페이지의 분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7번 이후는 자율 작성입니다.

Q-3	연구개발계획서 상 p.10 '최근 3년간 실적' 작성란에 1, 2차년도 RIS 과제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하나요?
A-3	- 기재하시면 됩니다.

Q-4	연구개발계획서 상 p.10 '실적' 작성란에 최근 3년간 실적이라고 하면 언제부터의 실적을 기재하면 되나요?
A-4	- 2021년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.

Q-5	연구개발계획서의 p.12 '협업기관 책임자' 작성란에 모든 협업기관 책임자에 대해서 작성해야 하나요?
A-5	- 네. <u>대학</u> , <u>기업</u> , <u>혁신기관</u> , <u>병원</u> 모든 협업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.

Q-6	연구개발계획서의 p.14 '참여기관 현황'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?
A-6	- ' <u>대학</u> , <u>기업</u> , <u>혁신기관</u> , <u>병원</u> ' 모든 기관은 작성해야 합니다. 다만, 비영리기관은 ⑤~⑮번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Q-7	연구개발계획서 p.19 '별첨자료' 에는 무엇을 첨부하는 것인가요?
A-7	- 연구개발계획서 본문에 작성해주신 모든 실적(주관, 협업)에 대한 증빙자료들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.
Q-8	연구개발계획서 p.19 '별첨자료' 에 협업 연구책임자의 경우 현 재직 중인 직장에서 나온 실적만 기재하여야 하나요? 전 직장 실적도 기재 가능한가요?
A-8	- 협업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경우,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Q-9	하나의 대학교에서 4명의 교수가 참여할 경우, 주관연구책임자를 4명으로 기재해도 되나요? 교수마다 역할(책임)이 다릅니까.
A-9	- 4명 중 1명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해주셔야 합니다. 주관연구책임자는 참여기관별 1명으로 제한하며, 1명의 책임자를 제외한 교수님은 참여 인력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.
Q-10	연구개발계획서 <요약문>에 '국문핵심어(8개), 영문핵심어(8개)'를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?
A-10	- 국문/영문 각 최대 8개까지 기재 가능하므로 가능한 만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.
Q-11	[붙임5] '연구윤리준수 서약서' 전자서명 가능한가요?
A-11	-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(주관/협업)이 직접 자필 서명 해주셔야 합니다. 만약 한 장에 주관기관 협업기관의 자필 서명이 어려우신 경우, 기관별로 나누어 자필 서명을 한 후 주관기관에서 취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Q-12	[붙임6] '자가유사과제검색(NTIS)' 에서 중복성 검토 점수 기준이 따로 있나요?
A-12	- NTIS 기준유사도 60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
Q-13	[붙임7] 협업기관 참여의사 확인서는 모든 협업기관들이 작성해야 하나요?
A-13	- 기업을 포함한 대학, 기관 등 모든 협업기관은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 하지만 별첨서류 중, 2번 재무제표는 기업만 제출 해당이 됩니다.

[기타사항]

Q-1	과제 참여 도중 참여인력을 바꿀 수 있나요?
A-1	- 과제가 선정된 후 주관기관책임자를 제외한 참여 인력은 사업단의 내부 절차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.

Q-2	본 과제는 국가 과제인가요?
A-2	- 본 과제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기준을 따르고 있으나, 3책 5공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 다만, 타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 및 참여학생 참여율은 확인 대상입니다.